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종합감사 -

2023.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승진임용 부적정	(주의)	3
2. 외부 사택 매각 부적정	(주의)	5
3. 접대비 집행 부적정	(주의)	7
4. 의료기기 구매할인 규정 미적용	(주의)	9
5.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불용품 무단 방출	(주의)	11
6.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시정)	13
7. 복무조치 없이 병원입원 및 해외여행 부적정	(시정)	15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평정,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정원초과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는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직제규정」 제10조(정원) 관련 [별표2]에 따르면 안동의료원에 들 수 있는 사무직 6급은 4명, 보건직 6급은 7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의료원에서는 사무직 6급은 4명, 보건직 6급은 7명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0000.00.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직 6급, 보건직 6급의 결원이 각각 0명, 0명이었는데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무직 6급 0명, 보건직 6급 0명을 승진 의결하여 감사일 현재 정원 0명(사무직 6급 0명, 보건직 6급 0명)을 초과하여 인사운용을 하고 있다.

2. 승진임용 배수 밖의 자를 승진임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인사규정」 제25조(승진방법)에서는 4급이하의 승진은 승진서열 명부상의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 임용시에는 승진서열 명부상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안동의료원에서는 0000.00.00. 인사위원회 심의 시 관리직 7급 승진의 경우 결원 0명에 대한 고순위자 3배수인 0명의 후보자 중에 승진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후보자 00번이 승진하여 인사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중 △△△은 ▲▲▲ 처분하시고,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 사택 매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총무부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외부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장기간 미사용 및 노후로 인해 불용 결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하며, 제2항은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의료원에서는 일반 입찰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했다.

그러나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외부 사택매각에 있어 1차 입찰(0000.00.00. ~00.00) 유찰 후, 재공고 입찰(0000.00.00.~00.00.)에 예정가격

(00,000천원)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유효한 입찰에 대해 입찰제한정보를 2인 미만 유찰로 잘못 설정하여 유찰로 처리하였고, 최종적으로 ○○○과 수의계약 (00,000천원)하여 매각함으로써 유효한 입찰로 정당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은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접대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다수의 건으로 접대비 예산으로 화분 등을 전달하였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접대비¹⁾ 포함)는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²⁾”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
- 1)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체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 2) 가) 이제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다)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라)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마)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바)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사)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한데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³⁾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 ○○○○ 장녀 결혼 화환, ◎◎◎◎ 취임 화분 등 규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자에게 00건을 제공하여 0,000천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공공기관이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의미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기 구매할인 규정 미적용
소 관 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00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 총0,000,000천원을 집행하였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채택·사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의 [별표 2의3]⁴⁾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요약

-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는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도착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적용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구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 총무부에서는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00건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할 경우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데도 의료기기 구매 입찰공고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대금 총0,000,000천원을 0개월 이내 결제하고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0개월 이내 결제하고 거래금액의 할인율을 0.0%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000,000천원 상당의 예산 절감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일실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의료기기를 구매 할 때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른 [별표2의3]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불용품 무단 방출
소 관 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 총 0,000,000원을 집행하였다.

의료원 「회계규정」 제122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을 불용결정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소재지,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 사유,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등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금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자산관리관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 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고정자산인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 사유, 예정가격 및 폐기방법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뒤 정당한 지정폐기물 업자가 매각 대금을 내고 처리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 ○○○○○에서는 매각대상 노후 배터리를 정당한 매각 절차도 없이 ●●●●●에게 0000.00.00.과 0000.00.00. 두 차례에 걸쳐 무단 방출하여 이를 무상 처분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지정폐기물 업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처리되어야 할 노후 배터리가 무단 반출되고, 수입 조치되어야 할 매각 대금(000천원 상당)은 조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매각대상 불용품을 불용절차 및 매각절차 없이 무단 방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0000년 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업체 직원, 건강검진 수검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권 0,000매 (00,000천원)를 구매하여 배부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을 준용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각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사용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내용에 따르면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방지 및 공공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상품권 구매 및 수불(배부)대장에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을 한 수령증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상품권 배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령자에게 배부하면서 수령확인을 위한 자필 서명 등을 받은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0000.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업무격려 등의 용도로 총0,000매 00,000천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령확인을 위한 자필서명 등을 받은 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은 채 지급하고 있으며,

0000.00.00.부터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배부 (인당 0,000원권 0매)를 하면서 지급계획과 기준 없이 상품권을 배부하였고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급대장 상 총 00장(000천원)의 상품권이 부족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상품권 부족분 00장(000천원)에 대한 재고 파악과 수령자 서명이 포함된 관리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복무조치 없이 병원입원 및 해외여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하 ‘안동의료원’이라 한다) ★★★에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지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1. 복무(병가)조치 없이 병원입원 부적정

안동의료원 「복무규정」 제27조(병가)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3조(휴가의 허가)에 따르면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의료원 직원은 상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면 사전에 병가 결재를 득하고 입원 등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안동의료원 ○○○○○○ ○○직0급 ◇◇◇◇는 0000.00.00. 안동의료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00일 퇴원하였으나 해당 기간 중에 병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승인도 받지 아니하는 등 의료원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였다.

2. 복무(병가)조치 없이 해외여행 부적정

안동의료원 「복무규정」 제33조(휴가의 허가)에 따르면 직원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의료원 직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가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안동의료원 ◇◇◇ ●● 직0급 ☆☆☆은 업무수행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로 0000.00.00. ~ 00.00.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가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휴가 복귀 후에도 사후 승인을 받지 않고 0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직원이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관련자 ◇◇◇와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